한국어 | Korean

권리 안내: NYC 배달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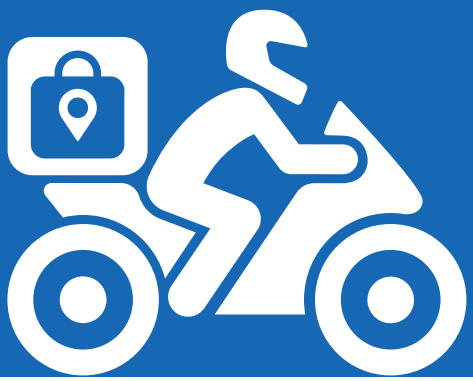

이 통지는 "제3자 식료품 배달 서비스"나 "제3자 음식 배달 서비스"가 아닌 배달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업체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mazon Flex와 Gopuff가 있습니다.

급여

- 배달 서비스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급여 수령 시 수수료 없음 옵션을 제공하고, 상세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법

- 배달 서비스는 근로자가 배달을 수락하기 전에 경로 세부정보를 알려 줘야 합니다. 세부 정보에는 픽업 주소, 예상 시간과 거리, 팁, 급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접근성

- 음식 배달을 한 경우, 배달 서비스는 **6회 배달** 후에는 보온 음식 배달 가방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주문을 받을 때 사업장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복 금지

권리를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복이 의심된다면 DCWP에 제보하십시오. DCWP는 절대로 근로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하기

권리가 침해되면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신고는 소비자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

- **nyc.gov/DeliveryApps** 참조
- **311**(뉴욕시 밖에서는 212-NEW-YORK)으로 전화하여 "배달노동자"(Delivery Worker)를 찾으십시오.

DCWP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NYC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01/2026